

이해상충관리지침

제정: 2026.03.03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249조의 3 제2항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9항에 따라 **주식회사 퍼시픽어소시에이트** (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기본원칙

제2조(투자자이익 우선의 원칙)

- ① 투자자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이해상충문제의 속지 및 차단)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이해상충의 관리 절차

제4조(이해상충문제의 파악·평가·관리 등)

- ① 회사와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규와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서면, 우편
 2.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모사전송, 메신저 등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투자제안서, 핵심상품설명서 등 마케팅 자료에 적절히 기재하는 방법
 4. 그 밖에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
-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절(거래제한 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 또는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장(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3절(정보차단벽) 제3관(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관리 상시 감시 등)을 참고하여 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상충의 유형 등)

- ①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회사 및 그 밖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 가. 특정한 투자 또는 투자대상에 있어서 회사의 고유재산운용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간의 이해상충
 - 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해상충
 - 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처리에 관한 이해상충
 - 라. 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의 영업행위 또는 고유재산투자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 마. 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간의 이해상충
 2. 회사가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간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간의 이해상충
 3. 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 가.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 나. 개인적인 투자행위(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등)로 인한 이해상충
 - 다. 다른 업무의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 라.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4. 동일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 가. 투자자의사결정 과정에의 관여 또는 특정 조건의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 나. 투자운용인력 등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 수행 임직원의 특정 또는 교체로 인한 이해상충
 - 다. 다른 투자자와의 다른 청약 또는 환매 처리로 인한 이해상충
 - 라. 그 밖에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요청으로 인한 이해상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달리 정하는 이해상충

- ②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 있는 거래의 유형 및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 사항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알려진 이해상충의 유형의 예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그 외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절한 조치(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수행)를 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대응 방안
회사/고객 과 대주주 /계열회사 간	대주주 또는 계열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총칭하여 “대주주등”)가 관여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건설업, 건설용역업,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의미함. 이하 같음)에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대주주등이 관여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참여 금지 - 단, (i) 관련 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ii)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한하여, (iii)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거쳐, (iv)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 (i), (ii)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법률의견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함)를 수령하여 확인하고, 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자료를 이사회 안건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 단, 대주주등이 관여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신용공여 방식(사업자금 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 금지(즉,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위 예외의 적용 없이 원천 금지)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주주등이 투자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정보교류 금지 대상 정보의 교류 차단(법령, 감사, 준법감시/리스크관리 등의 업무 처리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예외적 교류 가능) - 정보교류 차단의 조치를 통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 금지
	대주주 등이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 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
	대주주등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적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 행위	- 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84조 제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해관계인의 거래	-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으로서, 관련 법규 및 본 기준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거래는 예외적 허용 - 집합투자업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계열회사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제85조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거래 금지
	대주주등과 사무공간·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공유하는 행위	-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별도의 출입문 설치 - 전산자료가 독립하여 열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분리하여 구축
	대주주, 계열회사와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	- 대주주등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기록·유지의 적정성을 확인

- ③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 및 임직원은 관련 법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에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5조로 정하는 거래
- ② 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① 회사는 이해상충의 방지 및 업무수행의 적법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상품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 운용계획서, 투자제안서, 핵심상품설명서 등 마케팅자료를 검토할 때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 및 관리방안, 투자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여부가 적절한 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회사와 임직원은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

- ① 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을 위하여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법감시인은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이해상충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등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사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은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 제2항에 의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경영지원부장 및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2.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나 또는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관

리위원회회의 간사로서 이해상충관리위원회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을 주관한다.

3. 이해상충관리위원회회의 개최는 각 업무담당자나 책임자로부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또는 준법감시인의 직권에 의하거나 기타 위원 등의 안건 인식 및 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4. 준법감시인은 해당 안건 사항에 대하여 회의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장은 안건 조사를 위한 준법감시인의 자료제출 요청 또는 업무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준법감시인은 제4호에 의한 조사결과를 이해상충관리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추진 중단을 결정하거나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준법감시인은 제8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전사적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이해상충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와의 운용업무 분리)

회사는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무공간 분리**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부서와 고유재산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은 벽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부서(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부서를 포함한다)의 사무공간과 분리시킬 것
2. **전산시스템 구분 및 접근차단**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부서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유재산 운용부서가 개별적인 전산시스템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전산시스템의 계정구분 및 접근권한설정 등을 통하여 운용관련시스템(운용관리시스템[OMS], 회계정보시스템, 운용지원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상호간 접근을 차단할 것
3.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주문실행자"라 한다) **지정** : 회사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문요청을 처리하는 주문실행자를 지정할 것. 이 경우 회사가 지정한 주문실행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문요청 이외에 주문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가. 회사가 지정한 주문실행자 이외의 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주문정보에 대한 접근
 - 나. 회사가 지정한 주문실행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주문정보를 운용업자의 내부 및 외부(운용업자의 준법부서, 리스크관리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팀 등은 제외한다)로의 직·간접적 전달
 - 다. 회사가 지정한 주문실행자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주문정보에 대한 조회이력 미관리
4. **임원 겸직 금지**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부서 또는 고유재산운용부서의 임원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부서의 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임원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5. **합동회의 금지**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부서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유재산의 운용부서간 합동회의는 금지할 것. 다만, 투자 의사 결정 등이 수반되지 않는 회의로서 시장, 산업에 대한 분석회의는 가능하다.

제4절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제11조(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 ① 투자자 또는 그를 대리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장부·서류의 열람 청구에 응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및 제3절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